

(긴급)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재공고

울산광역시에서 설립·지원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「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」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. 9. 12.

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

채용 분야	인원	주요 업무	지원 자격
미화원 (계약직)	1명	• 시설미화	- 청소에 적합한 성실한 자 ※ 영유아 관련 기관 청소 이행자 우대

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※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(영유아보육법 제20조)는 채용할 수 없음

1.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1)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)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
3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
4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5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8)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9)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
3.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2

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

전형구분	전형일정	비고
채용공고 및 서류접수	• 2025. 9. 12.(금)~9. 23.(화)	- 2025. 9. 23.(화) 12:00 마감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• 2025. 9. 23.(화) 17:00 이후	- 개별통보 -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보
면접전형	• 2025. 9. 25.(목) 10:00	- 구술면접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• 2025. 9. 25.(목) 17:00 이후	-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

※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3

제출서류

- ① 입사지원서 1부(연락처 필수 기재) <첨부 1>
- ② 자기소개서 1부(A4 2장 이내) <첨부 2>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<첨부 3>

※ ①, ②, ③ 첨부된 양식 활용하여 제출

4

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

- (접수기간) **2025. 9. 12.(금)~9. 23.(화) 12:00**
(평일 09:00~18:00/**주말 및 공휴일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**)
- (접수방법) 방문, 우편 접수(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)
 - ① 방문 및 우편 접수: (44035)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(전하동)
 - ② 문의처: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☎ (052) 266-4173(담당자: 운영지원팀장 고윤정)

구분	미화원
보수기준	• 2025년 최저시급(10,030원) • 4대 보험 적용
근무시간	• 평일 9:00~16:00, 격주 토요일 9:00~17:00 ※ 근무시간 협의 가능 ※ 휴게시간 1시간 포함
경력인정	• 경력 불인정
근무장소	•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(전하동)
계약기간	• 2025. 10. 13.~12. 31.(3개월) ※ 근무 개시일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※ 직원 업무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가능
복리후생	• 근로기준법 준용

○ **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,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.**

○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(전자서류 제외)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<첨부 4>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청구기간에 지원자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, 해당 서류는 파기됩니다. (청구기간: 2025. 9. 12.~9. 23.)

○ **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.**

○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**임용 후 1개월 수습기간**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.

○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.